

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도시재정비추진지구 내에서 개별 사업구역의 시행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, 사업구역별 시행단계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전에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,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하게 하였습니다.
- 또한,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-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